

GANGJIN 

# *Web Contents*



# 목차

목차	2
민원서식	4
식품영업 신고	4
첨부파일(1)	4



민원사무처리

민원서식

## 식품영업 신고

작성일 2020.09.15 10:47      등록자 한설희      조회수 219

첨부파일(1)  26\_식품영업 신고.hwp 36 hit/77.0 KB [다운로드](#) [미리보기](#)

### 1. 사무안내

즉석판매제조·가공업, 식품운반업, 식품소분업, 식용얼음판매업, 식품자동판매기영업, 유통전문판매업, 용기·포장류 제조업, 기타식품판매업,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, 식품접객업(휴게음식점.일반음식점.위탁급식.제과점)등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

2. 신청대상자: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

3. 신청방법: 방문

### 4. 관련법규

-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

5. 수수료: 28,000원

### 6. 구비서류

- 위생교육 수료증 1부
- 건강진단서 1부
- 제조·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(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에 한함)
- 시설사용계약서(식품운반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)
-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
(LPG사용하는 휴게·일반음식점, 제과점영업에 한함)
-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 1부  
(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, 조리,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)
-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본,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  
(휴게·일반음식점, 제과점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66㎡이상인 경우나, 2층 이상에 위치하며 100㎡이상인 업소)
-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에 한함)(세부 구비서류는 첨부파일 참고)

7. 처리기간 및 제출처: 즉시(3시간 이내) / 민원봉사과(☎430-3425)

목록



GANGJIN

# ***Web Contents***

